

『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2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3월 4일

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인 기

나. 제안이유

- 「기초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현행의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하여 기초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지급하는 효도수당 및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폐지와 관련 서식 삭제 (안 제2조제6호, 제26조 ~ 제29조, 별지서식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기초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('14.7.1)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추가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의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하여 기초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효도수당 및 만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수수당 폐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기초연금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'14. 7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중복 수혜 논란이 있는 효도수당, 장수수당 등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 100분의 40중에서 100분의 10을 추가 차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3조에 비용분담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충분한 국비확보를 통해 기초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